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우리 시에서는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 월 9 일

파 주 시 장

1. 위촉분야 및 인원

구 분	위촉분야	위촉인원	위촉기간	비 고
공개모집	시민고충처리위원	2명	4년(연임 불가)	

2. 주요업무

- 가.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 나. 시장 및 파주시 의회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다.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라.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마.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바.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3. 지원자격

-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결격사유) 및 같은 조례 제10조(겸직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나. 다음 자격요건 중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제2조 적용
- ※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 제1항제4호에 따라 명예퇴직에 의해 4급 이상으로 특별승진 임용된 자는 제외
-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적용

다.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해당사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결격사유) 해당사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겸직금지) 해당사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소속행정기관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 경우 특별한 이해관계의 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를 준용한다.

4. 위촉 신분 및 보수

- 가. 위촉신분: 위촉직(비공무원)으로서 주 20시간 시민고충처리위원 활동 수행
- 나. 활동비: 임기제공무원 5급(상당) 연봉 하한액의 1/2 (월 290만원)

5. 심사방법

- 가. 1차 서류전형: 자격요건 심사
 - ※ 자격요건 적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일정 개별통지
- 나. 2차 면접심사: 적격요건 심사
 - ※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기본자세,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다. 의회 동의 대상자 확정: 의회 동의 대상자 확정 후 개별통지
 - ※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 제1항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됨
- 라. 최종 발표(2026. 9월 예정): 파주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 최종 발표는 의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지원서 접수

- 가. 공고기간 : 2026. 7. 9.(목) ~ 7. 23.(목)
- 나. 접수기간 : 2026. 7. 24.(금) ~ 7. 30.(목) / 09:00 ~ 18:00
 - ※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다. 접수장소 : 파주시 시청로 47, 중앙빌딩 1층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대리접수 불가)
- 마. 제출서류
 - 1) 지원서 1부
 - 2) 자기소개서 1부
 -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6)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하며, 자격 요건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히 제출)
 - ※ 지원서 등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 가. 지원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지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나.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
- 다. 부정한 목적으로 지원서 등 선발전형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함.
- 라. 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마. 본 선발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 통보하며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함.
- 바.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공고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파주시의 해석에 따름
-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파주시 감사관 시민권익팀(031-940-5973)으로 문의